

평생교육 관련과목 및 유사과목 인정 안내

1. [개정]평생교육법 평생교육 관련과목

〈표-1〉 (개정)평생교육 관련과목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정일 : 2008.2.18]

구분		과목명
필수 (5)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 (21)	실천 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방법 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비교

1. 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 (개정)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제927호, 2008.2.18)의 경과조치에 의해 관련 과목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함.

II. [구]평생교육법 평생교육 관련과목

〈표-2〉 (구)평생교육 관련과목 [(구)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정일 : 2000.3.31]

구 분	종 류
필수과목 (7)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또는 산업교육방법론 중 1과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중 1과목)
선택과목 (10)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기업교육론,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 장애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 비고

1.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14학점 이상(영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학점 이상)을 이수한다.
3.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하고, 학습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3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후(또는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이수중이거나 이수후)에 할 수 있으며,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할 수 있다.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목의 기관·단체 중에서 실습생의 의견을 들어 당해 학교 또는 평생교육사양성기관의 장이 선정한다.

- 가. 평생교육사양성기관. 다만, 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 이수중인자는 당해 평생교육사양성기관외의 다른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 나.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
- 다. 실업계고등학교·산업체부설학교·실업계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라.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
- 마.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 바. 청소년·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훈련·연수·선도·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사회단체
- 사.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

※ 구법 적용자의 현장실습 가능기관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나, 가능한 개정법 적용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현장실습기관 선정을 권장함.

Ⅲ. 사회교육학의 영역(사회교육 관련과목)

▣ 과목수강 인정 해당년도 : ~2002년 2월 28일(~2001학년도 동계계절학기)

〈표-3〉 사회교육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학의 영역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정일 : 1983.9.10]

구 분	사회교육학의 영역(교과목)		비 고
1. 공통필수	사회교육개론	사회교육방법론	2과목 필수
2. 사회교육학	사회교육학 사회교육행정론 사회교육법규 사회교육통계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 사회교육과 여가 사회교육과정 및 평가 사회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사회교육과 사회문제	사회교육자료개발 사회교육과 특수교육 성인·청소년지도 평생교육론	1과목이상 필수선택
3. 사회·심리학	사회복지론 사회사업론 사회정책 사회조사방법 사회학개론 교육사회학 농촌사회학 도시사회학 산업사회학 도서관학 박물관학	교육심리학 노인심리학 사회심리학 산업심리학 상담심리학 성인심리학 아동심리학 청년심리학 지역사회개발론 노인학 여성학	1과목이상 필수선택
4. 직업교육학	산업교육론 산업교육방법론 산업교육과정론 직업기술교육 직업교육방법 직업교육과정 및 평가 직업윤리	인력개발론 인간자원개발론 조직이론 레크레이션 지도	1과목이상 필수선택
5. 사회교육실습	교육실습 또는 실무실습		필수과목 (비학점:4주)

주) 사회교육학의 영역 교과목의 과목당 학점은 2학점 이상(또는 32시간이상)으로 하되, 15학점이상(또는 240시간이상)을 취득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7과목(사회교육실습은 제외)이상을 이수하여야함.

※ (구)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제765호, 2000.3.31) 제2조에 근거하여 위의 과목들 중 2002년 2월 말일까지 이수한 과목은 (구)평생교육법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IV. 평생교육 관련과목 유사과목 인정 심의

■ 심의대상

-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다른 명칭의 교과목

※ 단, 「(개정)평생교육 관련과목 유사과목 인정 교과목(〈표-4〉 참조)」 및 대학별 기심의 교과목(홈페이지 별첨자료 참조)은 심의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관계법령

- (개정)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8.2.18)

비고 1. 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 과목으로 본다.

■ 유사과목 인정 심의 절차

- 종전 과목을 이수한 대학 측에서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확인서(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를 발급받아 강의계획서와 함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제출된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인정 심의를 실시하여 인정 여부 결정

■ 유사과목 인정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

- 대학 측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등 교과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붙임]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표-4〉 (개정)평생교육 관련과목 유사과목 인정 교과목

구분	법령과목명	유사인정 과목명
필수 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원론, 평생교육연구, 평생교육론연구, 평생교육학연구, 평생교육이슈, 평생교육기초, 평생교육론기초, 평생교육학기초, 평생교육세미나, 평생교육론세미나, 평생교육학세미나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경영,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경영의 이론과 적용, 평생교육경영세미나, 평생교육경영론세미나, 평생교육경영연구, 평생교육경영론연구, 평생교육기관경영, 평생교육기관경영연구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방법, 평생교육방법연구, 평생교육방법론연구, 성인교육방법론, 평생교육방법론의 이해, 평생교육방법세미나, 평생교육방법론세미나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연구,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이론과 실제,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세미나,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세미나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실습세미나, 평생교육실습연구, 평생교육실무실습
평생교육 구분 필수 과목	청소년교육론	청소년교육, 청소년교육개론, 청소년교육세미나, 청소년교육론세미나, 청소년교육연구, 청소년교육론연구
	노인교육론	노인교육, 노인교육개론, 노인교육세미나, 노인교육론세미나, 노인교육연구, 노인교육론연구
	여성교육론	여성교육, 여성교육개론, 여성교육세미나, 여성교육론세미나, 여성교육연구, 여성교육론연구
	시민교육론	시민교육, 시민교육개론, 시민교육세미나, 시민교육론세미나, 시민교육연구, 시민교육론연구
	특수교육론	특수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세미나, 특수교육론세미나, 특수교육연구, 특수교육론연구
	성인학습 및 상담	성인학습 및 상담론, 성인학습 및 상담 세미나, 성인학습 및 상담론 세미나, 성인학습 및 상담 연구, 성인학습 및 상담론 연구
	아동교육론	아동교육, 아동교육개론, 아동교육세미나, 아동교육론세미나, 아동교육연구, 아동교육론연구
	문자해득교육론	문자해득교육, 문자해득교육개론, 문자해득교육세미나, 문자해득교육론세미나, 문자해득교육연구, 문자해득교육론연구, 문해교육론, 문해기초교육론
	교육사회학	교육사회
	교육공학	유사인정과목 없음
선택 과목	지역사회교육론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교육개론, 지역사회교육세미나, 지역사회교육론세미나, 지역사회교육연구, 지역사회교육론연구
	인적자원개발론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세미나, 인적자원개발론세미나, 인적자원개발연구, 인적자원개발론연구, 인간자원개발, 인간자원개발론, 인간자원개발세미나, 인간자원개발론세미나, 인간자원개발연구, 인간자원개발론연구
	직업·진로설계	직업·진로설계론, 직업·진로설계세미나, 직업·진로설계연구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원격교육, 원격교육활용론, 원격교육개론, 원격교육세미나, 원격교육론세미나, 원격교육연구, 원격교육론연구
	기업교육론	기업교육, 기업교육개론, 기업교육세미나, 기업교육론세미나, 기업교육연구, 기업교육론연구
	환경교육론	환경교육, 환경교육개론, 환경교육세미나, 환경교육론세미나, 환경교육연구, 환경교육론연구
	교육조사방법론	교육조사방법, 평생교육 연구방법론, 사회조사방법론, 평생교육 고·급통계, 평생교육 질적연구방법론
	상담심리학	상담심리, 상담심리학개론, 상담심리세미나, 상담심리학세미나, 상담심리연구, 상담심리학연구
	교육복지론	교육복지, 교육복지개론, 교육복지세미나, 교육복지론세미나, 교육복지연구, 교육복지론연구
	교수설계	교수설계론, 교수설계세미나, 교수설계연구
문화예술교육론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개론, 문화예술교육세미나, 문화예술교육론세미나, 문화예술교육연구, 문화예술교육론연구	

※ 위 교과목 명칭은 별도 유사과목 인정 심의 없이 인정 가능한 교과목 명칭임.

붙임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 학교명 :
- 과목 운영 학과(학부)명 :
- 유사교과목 확인내역

구분	법정 교과목명	인정 유사교과목명	과목 개설일	유사교과목 인정 사유
필수과목				
선택과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개설한 교과목이 상기와 같이 법정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00대 학교 총장

(또는 학과(부서)장)

※ [별첨] 과목별 강의계획서 각 1부.